

## 2020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감사관 민원조사 처리를 위한 법률 자문	
	2	교사C,D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교사 A,B의 기처분 취소가 가능 여부	
	3	사립유치원 징계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4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관련 법률 자문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여부 관련 법률 자문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법률 자문	
	7	폐교 대부 관련 재산 인도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8	학교 이전적지 토양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법률 자문	
	9	학교생활기록 자료 제공과 관련한 법률 자문	
	10	소송비용부담 주체 관련 법률 자문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검토	
	12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	
	13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관련 추가 검토	
	14	교원 징계업무 처리 관련 법률 자문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률 자문	
	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문안 검토	
	18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관련 법률 자문	
	19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 자문	
	20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	
	21	유아학비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 법률 자문	
	22	지분이전등기 소송 제기 관련 법률 자문	
	23	사립유치원 학원 운영을 위한 변경인가 가능여부 법률 자문	
	24	직위해제의 적절성 판단에 따른 법률 자문	
	25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반영 여부 법률 자문	
	26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절차 법률 자문	
	27	사회복무요원 공상에 따른 치료비 지급 관련 법률 자문	
	28	학교내 ☆☆☆관아 경관사업 관련 법률 자문	
	29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결과 통보 관련 법률 자문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30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련 법률 자문	
	31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총계	31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감사관 민원조사 처리를 위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간의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학교장 및 교감의 언행과 교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 은폐·축소, 무마 시도로 정신적 2차 피해  민원 처리 결과 통보 후 사건을 조사한 감사관에 대해 학교장의 거짓 발언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 등으로 2차 피해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은 학교장, 교감, 감사관의 언행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차 피해의 유형 중 학교장과 교감은 ‘업무 또는 고용상의 피해’에 해당하는지, 감사관은 ‘기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귀결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짐.  <input type="checkbox"/> 교육부의 2019. 2. 학교내 성폭력, 성희롱 대응 매뉴얼의 유의사항 및 2차 피해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 여부를 떠나 민원인의 진술에 의한다며) 학교장, 교감, 감사관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폐, 축소, 무마 시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2차 피해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짐.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이 각 제1호~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제6호의 집단따돌림이나 폭행, 폭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7호에서처럼 이 사건 민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교사C,D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교사 A,B의 기처분	<input type="checkbox"/> 교사 A,B는 「공직선거법위반」(기소유예)으로 2020.2.6. 경고 처분을 받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는데, 교사 C,D에 대한 2020.2.27.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input type="checkbox"/> 교사 A,B의 경우도 교사 C,D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교사 A,B에 대한 경고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교사 C,D의 대한 현재 결정은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취소가 가능 여부	결정을 이유로 교사 A, B의 경고 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p>라, 감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현재의 판단으로 현재의 기속력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C,D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따로 A,B에게 현재 결정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즉 A,B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징계의결이 부당한 것은 아님.</p> <p>결과적으로 C,D에 대한 현재 결정만을 이유로 한 교사 A,B의 경고 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는 교사 C,D에 대하여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임.</p> <p>그 인정효력의 범위를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교사 A,B에게 확장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만일 교사 A,B의 징계혐의 사실과 교사 C,D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이 100%로 동일하다면 교사 A,B에 대한 교사 C,D의 헌법소원 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됨.</p>
3	사립유치원 징계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신청 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신청과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인 사립유치원 원장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p> <p>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징계의결 요구 신청</p>	<p><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법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자는 공무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징계부가금 부과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므로 당해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넓혀서는 아니 되므로, 사립유치원 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직권재심의 후 징계의결 요구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p>	<p>재심의 제도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징계요구 신청의 적법·타당성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지원청에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하더라도 사립유치원 교원(원장)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의결은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사립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결의요구 신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직권재심의를 통하여 변경신청하도록 할 수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결의요구 신청이 명백히 위법하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의 변경신청을 기다림 없이 직권으로 징계의결 요구만 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보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제66조의 징계의 종류 및 징계기준 등에서는 징계부가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유치원 원장은</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p> <p>징계의결 요구 신청기관인 ‘☆☆교육지원청’ 에서 직권재심의 후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없음” 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p>
4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관련 법률 자문	<p>□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에서는 징계 처분 전 우리교육청으로 징계의결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교원에게 징계처분하여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바, 처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p>	<p>□ 위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사립학교 법인이 감독청의 감독권한을 벗어나 임의적인 징계처분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교육청 감사결과와 다른 처분 후 교육청에게 일방 통보한 것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심의 요구 가능함.</p> <p>□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는 징계처분에 관한 절차를 정한 내용으로 이는 임용권자인 해당 사립학교재단의 적정한 징계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요구 가능함.</p> <p>□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를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제66조의 2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고, 절차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 따라서, 해당교원은 아직 징계를 받은 바 없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통보 받은 후 재심의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여부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여부	<input type="checkbox"/> 병설에 따라 감사는 실시 할 수 있으나, 징계는 요구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 제42조의 2에 따라 교육청이 감사(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 요구는 어렵다고 할 것임.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판단	<input type="checkbox"/> 계약특수조건은 법적으로 다툼소지가 있는 문제이며 동등 이상 물품 납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수차례 걸쳐 납품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므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정당하게 해지되었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조건 위반에 대하여 상호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한 것이므로 적법한 해지가 아님. <input type="checkbox"/> 업체의 계약위반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 업체는 계약조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식품전문가들의 의견상 동등으로 볼 수 없음. -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 미이행됨.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특수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이미 업체와 학교 간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계약은 해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가능 여부	<p>하는 것이 마땅함.</p> <input type="checkbox"/> 학교와 업체간 의견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측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정당제재 처분은 보류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였으므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계약해지에 대한 적법한 판결이 없는 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부정당제재처분 불가함. <input type="checkbox"/> 계약조건을 여러번 위반하였으므로 부정당제재는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대법원의 견해를 참고하여 해당사항을 모두 면밀히 검토후 신중하게 부정당제재처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7	폐교 대부 관련 재산 인도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군에 대부 예정인 ⊙⊙초 폐교 부지 내 현 대부자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군에 대부하고자 함. 현 대부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군이 이전 점유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군이 재산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
8	학교 이전적지 토양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소송대응 방향 및 답변서 검토의견 요청 교육청 대응 방향: □□초 이전적지에서 발생한 불소오염은 해당토지의 기반암인 화강암의 풍화로 자연발생한 것으로, 이는 「토양 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단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소송대응 방향 및 답변서 내용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소송대응 방향 및 답변서 내용 적정함. 다만, ☆☆☆구청의 정화책임의 구체적 비율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서조항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p>	
9	<p>학교생활기록 자료 제공과 관련한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28조 제3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p>	<p><input type="checkbox"/> 국회법상 자료 요구의 관련성의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상 자료 요구의 관련성의 요건(요구 자료가 특정 안전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이 있어야 함)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li> <li>- 국회법상 자료 요구의 절차적 요건(요구 시점 국회 폐회로 인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자료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섭단체와 협의하여야 함.)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li> </ul> <p><input type="checkbox"/> 국회법 제128조의 경우는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와 폐회 중에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질의 내용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국회의원 개인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국회법 제12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는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p> <p><input type="checkbox"/>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이라도 국회의원 개인은 학생의 학교생</li> </ul>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활기록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 이고(폐회시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 이러한 주체도 안건의 심 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됨.</li> <li>- 따라서 국회의원 개인은 공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학 교생활기록부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li> </ul>
10	소송비용부담 주체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input type="checkbox"/> 소송을 제기할 때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청구취지를 기재하며, 이 부분은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법원이 적정하게 판단하게 되며 필요시 원고 승소라도 피고 부담 또는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기도 함. 따라서 소장 접수시에는 피 고 부담으로 작성가능 함.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 소 판결 검토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감사관의 조사 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되는 경우 그 동안 조사 및 감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부각되어 향후 조사 및 감사관의 충분한 의견의 교환이나 의견 제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음.
12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매매계약 및 학교신축공사(2001) 시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18년 후 다목적강당 증축공사(2019) 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특약조건 “학교증축공사 시 폐 기물이 발견될 경우”의 근거로 하여 폐기물 처리 이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 특약조건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나, 처리 의무자는 △△ △△이므로 공사에게 폐기물 처리나 그 비용 청구는 불가능 함. 다만 공사에게 △△△△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가능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매도인은 2011.8.4.일자 청산 종결로 폐업처리 되었고, 자산보유자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유동화 자산 양도 후 자산관리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 등 업무를 지속해 온 한국☆☆☆☆공사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 가능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매매계약서 작성을 대행한 것일 뿐 계약당사자는 아니므로 공사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교육청이 △△△△를 대위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불법 폐기물을 처리한 책임을 물어 공사나 이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공사를 실질적인 매도인으로 보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청산된 △△△△가 공사측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계약 특약조건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나, 처리 의무자는 △△△△이며 법률상 채권·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소송은 가능하나 이미 폐업하고 청산종결되어 소송의 실익은 없음.</p> <p><input type="checkbox"/> 계약 특약조건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이행 청구 가능하고 자산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처리의무는 공사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p> <p><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는 자산관리자일 뿐이므로 공사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특약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함.</p> <p><input type="checkbox"/> 계약 특약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로 공사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무자력자인 △△△△를 대위 하여 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매매계약 제5조 특약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공사와 △△△로간의 매매는 토지매매가 아니라 채권자산의 매매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사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소멸시효 또한 적용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매매계약 제5조 특약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자산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공사에 청구 가능하며 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자체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함.</p>
13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관련 추가 검토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관련 추가 검토	<p><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매도인을 공사로 하여 청구원인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 있음(△△△△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수단적 주체인 점을 감안한 것).</p> <p>-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공사가 실질적인 매도인이 아니라고 본다면, 선택적으로 대위 범리구성을 해볼 수 있음.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을 전제로 한 것 소송은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p> <p>- 공사가 폐기물 매립자가 아닐 확률이 높는데, 이전 소유자들</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선택적 피고로 삼아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 소제기는 가능하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p>
14	교원 징계업무 처리 관련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징계위원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지?</p> <p><input type="checkbox"/> 2016년 징계의결 후 징계처분 발령이 보류된 징계처분을 현재 집행해야 하는지?</p> <p><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 권한으로 징계처분 취소가 가능한지?</p>	<p><input type="checkbox"/> 재의결 가능하고 재결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견책 징계를 취소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의결의 확정력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재의결은 불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됨.</p> <p><input type="checkbox"/> 기존의 견책 징계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에 당연무효, 취소 사유 등의 하자는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거나 재심사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견책처분 의결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야 함.</p> <p><input type="checkbox"/> 기존의 징계를 재의결해서는 안 됨.</p> <p><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 후 이에 대한 불복형태로 다투어야 함.</p>
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금 교부 등)에 의거, 학력인정 인천△△△△고에 2018년 1인당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80만원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40만원 증액하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였는바, 해당 시설에서 증액된 예산만큼 교직원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1인당 40만원씩 증액해서 지</p>	<p><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시설 설립자와 교직원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설립자가 개별 사안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월 40만원 인상분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음. 협조 공문은 법률이나 조례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증액 지급할 수는 없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급해야 되는지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보조금을 1인당 월 80만원에서 월 40만을 증액 지원하였다 하여 반드시 1인당 임금을 월 40만원 증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행한 공문은 적어도 1인당 월 1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 이상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열악한 교직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함. <input type="checkbox"/> 증액된 인건비 보조금 40만원만큼 반드시 일률적으로 급여를 인상하여야 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설립자와 교직원 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등 보조금 교부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여부와 보조금 액수는 교육청의 판단여지가 존중되어야 할 것임.
16	<p>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p>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① 제4조 ①항 개정(안)관련: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한다’ 로 개정시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교육감의 예산수립권 및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반됨. <input type="checkbox"/>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다 「지원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지원한다」로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개정안과 같은 조례로 법률에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현행 조례대로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는 내용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예산권을 존중해주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임.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② 제4조 ①항 개정(안)관련: 준용법령(사립학교법)을 추가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범위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는 점에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준용법령을 추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③ 제4조 ①항 1호 개정(안) 관련: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복무형태 및 복무내용에 대하여 교원 간 보수 등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은 근로자에 불과함. 시설의 장과 위 교직원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건비가 책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정되는 것임.</p> <p><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에서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의 보수 등에 대한 별도의 준용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므로 조례로만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시설 교직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되, 그 의무지원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됨.</p> <p><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어렵고 재검토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p> <p>④ 제5조 개정(안) 관련: 조례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 가능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상위법에서 지원금의 지원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조례에서 지원금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제정권자의 입법형성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법에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정, 취소근거가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⑤ 제5조 개정(안) 관련: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 시’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의 평생교육시설 지정권과 지정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이와 별도의 제한규정을 정할 필요는 없으며,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 위 평생교육법에 수권규정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불가함.  <input type="checkbox"/>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제한 기준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불확정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 시’라는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 시”라는 부분은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규정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만으로 어떠한 행위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운영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개정 조례안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표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임.
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에 근거한 심의위 운영규정(안) 쟁점검토 ①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에 근거한 심의위 운영규정(안) 쟁점검토 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없는 내부 행정규칙이고 근거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문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소위원회 위임방식에 있어 소위원회 인적구성이 선결 조건인지 여부</li> <li>③ 해촉 규정을 근거로 직위해제와 유사한 직무배제가 가능한지 여부</li> <li>④ 비공개원칙을 근거로 녹음기기 소지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li> <li>⑤ 자체해결제 등으로 종결된 사안의 긴급선도조치 법적 지위 및 처리(추인 거부 또는 철회요청)</li> </ul>	<p>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소위원회 인적구성이 선결되면 좋으나, 법령이 그것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양측 설 모두 타당)</li> <li>③ 명시적 근거 없으므로 직무배제 불가</li> <li>④ 비공개원칙을 근거로 녹음기기 소지 제한이 가능</li> <li>⑤ 추후 사정변경이 있었다해도 그것을 이유로 거부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 학교장에 철회를 요청</li> </ul> <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에 근거한 심의위 운영규정(안) 쟁점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거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요</li> <li>② 소위원회 권한 위임 이전에 그 인적구성이 선결되는 것이 타당</li> <li>③ 명시적 근거 없으므로 직무배제 불가</li> <li>④ 비공개원칙을 근거로 녹음기기 소지 제한이 가능</li> <li>⑤ 심의위원회가 그것을 사유로 추인을 거부하거나 학교장에 철회를 요청하는 것 모두 가능</li> </ul> <p>□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에 근거한 심의위 운영규정(안) 쟁점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거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요</li> <li>② 소위원회 권한 위임 이전에 그 인적구성이 선결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음(소위원회 인원구성 변동이 있어도 별도의 재위임 불요)</li> </ul>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③ 명시적 근거 없으므로 직무배제 불가</p> <p>④ 비공개원칙을 근거로 녹음기기 소지 제한이 가능</p> <p>⑤ 심의위원회가 그것을 사유로 학교장에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p>
		<input type="checkbox"/>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문언의 합법성 세부검토	<input type="checkbox"/>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에 특별히 위법적인 규정은 없음
18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수사 의뢰한 사건이 최종 재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따른 감사 처분 시점에 대한 자문	<input type="checkbox"/> 형의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판결 중 가장 관대한 처분에 속함. 제2심 선고유예 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판결된 이상, 감사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선고유예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감독관청은 위 형사판결과는 별도로 감사처분이 가능함.
19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예·결산서의 급여 정보가 포함된 세부내역(산출기초) 전부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의거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예·결산서의 산출기초 중 정보공개 범위 밖으로 사료됨(비공개대상 정보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예·결산서의 산출기초 중 급여 부분은 비공개 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을 개인정보(성명)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 의거 해당 유치원에서 제3자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이 의견에 기속되는지 여부	<p>상 정보이고 그 외의 정보는 공개 가능함.</p>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가능하나 일반인의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도 정보공개 범위 밖으로 사료됨(비공개대상 정보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은 개인정보(성명)을 가려도 직위에 따른 특정화가 가능하여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20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하자기간이 종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탁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재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이 아니며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공탁을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사수급인이 공사도급인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장차 공사도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공사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압류(또는 가압류)한 압류대상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압류(또는 가압류)의 경합을 전제로 한 공탁 대상도 되지 아니함.  나아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반환시기가 도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공사도급인이 공사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급인인 시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채권자들이 시공사를 채무자, 제3채무자를 교육감, 압류대상 채권을 별도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한 별도의 채권(가)압류 명령이 송달되어야 할 것임. 시공사의 1차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고 귀청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청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의무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채무가 공사대금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과 관계없이 공사업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이는 공사대금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질의서에 표시된대로 준공금에서 상계처리된 금원이라하면 실제로는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지만 공사업자가 하자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 상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상계처리는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판단됨. 하자기간이 종료된 하자보증금은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채권자들에게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대금의 일부인지 여부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계약 여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시공사들의 하자보증은 &amp;&amp;신용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있음, 시공사의 신용불량 등으로 &amp;&amp;신용보증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건축주들은 시공사와의 약정으로 공사대금 중 일정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 명목</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으로 유보해 놓는데, 이런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일부 그리고, 귀청이 시공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공사대금이던 하자보수보증금이던 시공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와 가압류를 하여 채권이 경합하는 상황이라면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2차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임.
21	유아학비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반환 처분 취소 청구(행정소송) 관련 자문, 소송 예상 진행 경과 등	<input type="checkbox"/> 당연무효 판결 판단(패소 예상), 처분취소 권한 <input type="checkbox"/> 당연무효 판결 판단(패소 예상), 고발검토 요청 <input type="checkbox"/> 당연무효 판결 판단(패소 예상) <input type="checkbox"/> 취소 판결 판단(패소 예상), 조정권고결정 유도
22	지분이전등기 소송 제기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토지의 일부 지분이 이전된 경우 잔존 지분에 대하여 소송 제기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론 종결 전에 관련 토지의 지분을 매수자에게 소송 제기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필요 <input type="checkbox"/> 소송 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변론 종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소송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필요 <input type="checkbox"/> 추정승계인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필요
23	사립유치원 학원 운영을 위한 변경인가 가능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에서 원아 수 감소를 이유로 학원 운영을 위해 유치원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 변경 건축법, 소방법 등 용도 변경 시 고려해야 하는 법령에	<input type="checkbox"/> 변경인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유아 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인가를 하는 것이 상당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위배사항이 없을 시 관할청에서 해당유치원의 내부구조 변경 인가 처리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상 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충족하면 관할청에서는 인가 여부만을 판단하여 변경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
24	직위해제의 적절성 판단 관련	<input type="checkbox"/> 직위해제의 적절성 판단에 따른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직위해제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 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25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반영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원에 고용된 학원 강사가 수강생에게 폭행한 사실로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바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에 대해 생활지도 불철저(학생체벌 등)를 이유로 경미한 사항 별점 10점이 적정한지, 고의·중과실 별점 30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반의사 불벌죄로서 공개사과에 이은 고소취소가 있었으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그 대처에 문제가 있어서 약식명령까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는 체벌에는 해당할 지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야 마땅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별점 10점의 부과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약식명령 50만원은 벌금형과 수강생에 대하여 훈육의 방법으로 우발적인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경미한 사항 별점 10점’ 이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함. <input type="checkbox"/> 강사를 주의 깊게 살펴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강사가 공개사과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임, 50만원의 벌금형이 결코 경미한 처벌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 점으로 별점 30점에 해당하는 처분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약식 벌금 50만원에 해당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된 점을 볼 때 별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0점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학생, 학부모, 학원이 원만히 합의함, 폭행의 결과가 경미함, 학생들 앞에서 강사가 공개사과 함, 단순폭행으로 약식명령 받음을 이유로 경미한 사항 별점 10점이 적적함
		<input type="checkbox"/> 강사, 부원장의 1차 의견서에 ‘퇴사’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를 행정청은 ‘퇴사’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학원은 이의 신청을 하며 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권고 휴직’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를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퇴사’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계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권고 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계속 받았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하여 원장의 권고에 따라 복귀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직이 아닌 휴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임.
			<input type="checkbox"/>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권고 휴직’하였다가 복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해당 강사가 학원을 퇴직하였다가 다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재 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강사의 확인서에는 본인 스스로 ‘퇴사했다’고 밝히고 있고, 퇴사 후에도 약정 급여나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강사의 수업중단 및 수업재개는 퇴사 후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학원에서 강사에 대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2개월 후에 복직하여 수업을 한 것으로 볼 때 권고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강사입장에서는 강의를 그만둔다는 의미에서 퇴사와 휴직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경관사업 관련 법률 자문	<p>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구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공문으로 보낼수 있는지</p> <p>공사를 시작하여 학교 담벼락을 훼손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구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p>	<p>손하였다면,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로 인한 손해보상이나 의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음.</p> <p>다만, ○○구가 해당 사업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학교의 담벼락 등이 계속 훼손되는 등 재산상 손해가 확대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가 해당 사업을 향후 계속 시행하더라도 학교측의 재산상 손해가 더이상 확대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측으로서는 기왕의 손해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장래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구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p> <p>자료에 의하면 2020.4.3.경 ○○구청에서 공사중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공사중지가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음.</p> <p>합의 없는 경우 학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이므로 담벼락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라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이든 요청이든 추후 다툼의 증거가 될 것임.</p> <p>공사중지는 학교가 구청에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강제력이 있음.</p> <p>담벼락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의 방법 중 하나로 원상회복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학교 내 담장, 숲 등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학교장이 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학교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구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p> <p>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침해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구청에 의한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공사 진행이 이루어진 것인바,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침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함.</p>
29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결과 통보 관련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교내 학생이 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진술이 아동학대에 해당 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에 해당될 경우, 학대의 종류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p> <p><input type="checkbox"/>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무엇인가?</p>	<p><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에 해당됨.</p> <p><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며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임.</p> <p><input type="checkbox"/>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p>
30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련	<p><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의 측량착오 또는 경계설정 잘못으로 사인이 읍중학교에서 설치한 담장을 신뢰하여 담장 바깥쪽의 토지를 본인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p>	<p><input type="checkbox"/> 변상금 징수가 가능하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기준 시점은, 민원인에게 보낸 최초 공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법률 자문	<p>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및 대상기간 질의</p>	<p>□ 구두통보시점인 귀 학교에서 2018.11.경 경계측량을 통해 위 A,B에게 구두로 담장 밖 토지가 귀 학교의 소유인 사실을 알렸을 때, 즉 위 A,B가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을 때가 변상금 부과 기산점이 됨.</p> <p>비록 잘못된 담장설치로 인하여 그동안 위 A,B가 담장 밖 토지를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로 오인하고 점유해 왔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안 때부터 위 A,B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로 전환되기 때문임.</p> <p>다만, 2018.11.경에 구두로 통보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추후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실질은 감축)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2019.10.7.에 보낸 공문내용에 ‘2018.11.경 구두통보 한 바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2018.11.경 경계측량을 하여 구두로 통지한 사실과 2019.10.7.자 공문도 보낸 사실을 적시하시어 재공문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짐.</p>
31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p>□ 온라인상에 게시된 ♡♡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안내문에 ◇◇◇◇◇서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계약 여부 및 처리 방법</p>	<p>□ ♡♡도서관과 ◇◇◇◇통신 사이에 ‘◆◆◆◆’ 폰트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란가 ◇◇◇◇통신의 저작권 준수 요청에 대하여 응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 됨.</p>